

B2B 구매론 계약서

(구매기업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_____(이하 “구매기업”이라 함)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구매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(이하 “물품 등”이라 함)을 판매한 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(이하 “원 약정서”라 함)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.

제 1 조(목적)

이 계약은 구매기업이 은행의 “B2B 구매론”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“MP(Market Place, 마켓플레이스)”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장(e-Marketplace)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시장을 말합니다.
- “구매기업”이라 함은 MP 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은행의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말하며,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MP 자체를 말합니다.
- “판매기업”이라 함은 MP 에서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은행의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말하며,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MP 자체를 말합니다.
- “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”(이하 “매매계약서”라 함)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MP 에서 체결한 거래품목의 수량, 단가,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정보와 결제수단, 결제예정금액, 만기일, 결제예정일, 권리이전(인수)예정일 등의 대금결제정보가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말합니다.
- “지급승인명세”(이하 “승인명세”라 함)라 함은 MP 에서 은행으로 전송된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구매기업이 은행으로 지급지시(일반거래인 경우) 또는 지급위탁(매매보호거래인 경우)한 구매자료를 말하며,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.
- “지급승인금액”(이하 “승인금액”이라 함)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하며, 매매계약서의 결제예정금액과 동일합니다.
- “구매기업결제일”(이하 “결제일”이라 함)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,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하며, 매매계약서의 만기일과 동일합니다.
- “선입금”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“지급승인기간”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“선입금기간”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, 선입금된 날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“지급보증”이라 함은 승인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승인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“권리이전(인수)”라 함은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이 배송받은 물품 등을 검수한 후, 해당 승인명세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최종 지급하도록 은행에 지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“일반거래”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 및 은행의 지급승인과 동시에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“매매보호거래”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구매기업의 권리이전(인수) 절차 및 은행의 지급승인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.

15. “기업인터넷뱅킹”이라 함은 기업뱅킹, Hana CBS, BiCNET 등을 말합니다.
16. “전자적인 방식”이라 함은 구매자료 전송, 선입금 등 B2B 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.

제 3 조(이용한도 및 지급보증)

구매기업이 MP 에서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게 전송하는 승인금액에 대하여 제 6 조 제 2 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,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며, 승인금액의 총잔액은 원 약정서의 “여신(한도)금액”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제 4 조(신용공여기간)

구매기업이 본 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급승인기간은 최장 ()일로 합니다.(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최장 180 일 이내에 직접 기재합니다.)

제 5 조(승인명세의 전송, 취소, 변경 및 제한)

- ① 승인명세의 전송,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.
 1. 구매기업은 MP 에서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승인명세를 전송할 수 있으며, 승인명세의 전송은 기업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.
 2. 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 3. 승인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.
 4. 승인명세 상 결제일을 후일로 지정한 경우, 익영업일로 자동으로 이연하여 처리합니다.
 5. 구매기업이 MP 에서 판매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기 전송된 승인명세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때 은행은 취소된 승인명세에 대하여 지급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명세 취소가 불가합니다.
 - 가.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을 실행한 경우
 - 나.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
 6. 매매보호거래 시 결제일 전영업일까지 권리이전(인수)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결제일 이후에도, 구매기업이 MP 에서 판매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기 전송된 승인명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7. 허위매출, 현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전송시, 은행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강제로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8.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으로 승인명세가 전송된 이후에는 승인명세의 변경이 불가합니다. 단, 매매보호거래시 MP 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매매계약서 상의 “권리이전(인수)예정일”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9. 은행은 MP 로부터 전송된 매매계약서와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으로 은행으로 전송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.
 10.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제공하여 B2B 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, 보증기관에서 정한 주채무 실행통지기한 내 최초 승인명세가 전송되어야 합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명세 전송에 의한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.
 1.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
 2. 본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여신이 연체중인 경우
 3. “신용정보 관리규약”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(연체, 대위변제 . 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)가 등록된 경우
 4. 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
 5.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6. 여신(한도)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 7. 본 계약에서 정한 지급승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
 8. 허위매출, 현금용통성거래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 용도 외의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등,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
 9. “B2B 구매론 판매기업 이용약정”이 체결되지 않은 판매기업에 대하여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경우
 10. 원 약정서 “제 4 조(감액,정지 조항)”에 의하여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
 11. 승인명세에 대하여 (가)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제한이 등록된 경우

제 6 조(개별대출의 실행)

- ①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대출이 실행됩니다.
 - 1.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: 선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.
 - 2. 만기입금하는 경우 :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. 단, 매매보호거래 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(인수)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.
- ② 선입금은 구매기업이 지급지시한 날로부터 결제일 전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. 단, 매매보호거래방식인 경우에는 구매기업의 권리이전(인수) 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.
- ③ 선입금은 승인명세 상 승인금액 범위내에서 횡수에 상관없이 분할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.
- ④ 개별대출의 기한은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취급이 가능하며, 개별대출의 만기일이 약정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시 취급이 가능합니다.

제 7 조(대출의 이자)

- ① 대출이자의 계산은 원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선입금 실행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.
- ② 대출이자는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시 징구합니다.

제 8 조(결제계좌의 지정)

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.
(구매기업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

제 9 조(개별대출의 상환)

- ① 개별대출금의 상환자원은 은행영업시간까지 제 9 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②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제 9 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서 자동상환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③ 자동상환처리시 상환자원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도, 원리금에 대한 부분상환이 가능합니다.
- ④ **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**
- ⑤ 상환순서는 은행이 정하는 자동상환처리 순서에 따릅니다.
- ⑥ 허위매출, 현금용통성거래 등 전자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선입금이 실행된 경우에는 그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.

제 10 조(지급보류 등록)

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(가)압류, 가처분, 체납처분 등이 구매기업 또는 은행에게 송달되는 경우, 구매기업의 신청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.

- 1. 구매기업에게 송달된 경우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기 전이라면 해당 승인명세를 취소한 후 구매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.
- 2. 판매기업이 전액 선입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하여 압류대상 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- 3. 지급보류 등록하는 경우
 - 가. 일부선입금하여 승인명세를 취소할 수 없거나 은행을 제 3 채무자로 하여 송달되는 경우에는 지급보류 등록하기로 합니다.
 - 나. 지급보류 등록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결제일 도래시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 실행하여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.
 - 다.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원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 11 조(수수료의 운영기준)

B2B 구매론 이용시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
1. B2B 이용수수료 :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시 부담하는 수수료로서, 은행과 MP 간 협약에 의해 사전 결정되며,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.
2. MP 수수료 :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시 MP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, 은행이 수납대행하며,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B2B 이용수수료와 MP 수수료 부담주체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.

제 12 조(이용시간)

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거래는 은행 영업시간 중 가능하며,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서비스 종류	평일	토요일/일요일/공휴일
조회	24 시간	가능
판매기업 등록	08:00~22:00	불가
선입금 신청	08:00~19:00	불가
구매자료 승인/변경/취소 (당일전송 당일만기) (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)	08:00~22:00 08:00~15:00(EDI 14:00 까지) 08:00~20:00(EDI 16:00 까지)	불가
벤더입금	08:00~19:00	불가

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. 단, 등록된 연락처의 변경 후,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,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③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보수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제 13 조(계약의 체결 및 변경)

- ① B2B 구매론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본 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,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④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 14 조(면책)

-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
- ② 본 계약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15 조(위험부담·면책조항)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15 조(계약의 효력)

-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.
-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내 지급승인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본 계약서,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가장 우선적용되고, 다음으로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순서로 합니다.
- ④ 은행과 판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
제 16 조(관할법원의 합의)

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,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7 조(기타 특약사항)

--

(서명날인)

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 부씩 보관합니다.

20 년 월 일

[은행]

[구매기업(채무자)]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_____(인) 기업명 : _____(인)

주 소 :

주 소 :

본인은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협약을 체결함.	구매 기업	(인)
--	----------	-----